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유아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라 칭한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제 2조(목적) 본회는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시·도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두되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도 있다.

제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회 및 연차대회를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국내·외의 유아교육학 및 인접학문단체와 제휴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며 준회원은 학생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년 11월 9일)

* 정회원

1. 일반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유아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유아교육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유아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평생회원의 자격: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45세 이상의 일반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1. 학생회원의 자격: 유아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기관회원의 자격: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소, 국가기관, 기업체, 대학 또는 국공립 및 민간 도서관.

제 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다음 중 3, 4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1. 총회 참석 및 표결의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5. 단 회원의 권리는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해당된다. (개정 2013년 11월 9일)

제 7조(회원의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2년 3월 30일)

제4장 총회

제 9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

1.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이사회 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3년 11월 9일)

제 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2조(회원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013년 11월 9일 개정)

제5장 임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2014년 3월 22일 개정)

1. 회장 1명
2. 부회장 3인 이내
3. 상임이사 1명
4. 선임이사 약간 명
5. 당연직 이사
6.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선임한다. (2014년 3월 22일 개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중 1인을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칙에서 규정한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에서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4. 당연직 이사는 전임회장과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30)

제6장 이사회

제 1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1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제 19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지회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9.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0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014년 3월 22일 개정)

제 21조(이사회 회의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22조(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 **각 부서는 약간의 이사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2022년 1월 12일 개정)

1. 총무부

- ①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 ② 회원명부관리
- ③ 학술회의, 총회 및 이사회 개최 ·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 ④ 총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⑤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 ⑥ 재무와 관련된 사무
- ⑦ 홈페이지 관리

2. 기획부

- ① 학회의 발전 방향 제시
- ② 새로운 학회사업 발굴
- ③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3. 국내학술부

- ①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 관한 업무
- ② 국내, 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 ③ 학술위원회 학술업무 관장

4. 국제학술부

- ①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업무

- ② 국내, 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 ③ 학술위원회 학술업무 관장

5. 국내편집부

- ① 「유아교육연구」의 편집 및 발간
- ② 국내학술지 운영
- ③ 기타 국내학술 정보의 수집 및 제보

6. 국제편집부

- ① 「IJECE」국제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 ② 국제학술지의 운영
- ③ 기타 국제학술 정보의 수집 및 제보

7. 교육부

- ① 회원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 ② 각종 연수,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총괄

8. 홍보부

- ① 「한국유아교육학회소식」편집 및 발간
- ② 기타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물 출판

9. 사무국

사무국과 간사: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간사를 약간 명 둔다.

제7장 지회

제 23조(지회) 본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각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직할시는 인 접 도와 병합할 수도 있다.

- 1. 지회의 명칭은 ‘한국유아교육학회 (지역명)지회’라 칭한다.
- 2.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는 보고되어야 한다.
 - 1)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지회 회칙
 - 2) 본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 20인 이상의 지회 회원명단
 - 3. 지회에 관계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 24조(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 25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 26조(결산)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재산 및 회계 제반 규칙) 본 회의 제반 재산 및 회계 관련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및 회계 정관에 따른다.

제 28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9조(재산의 관리) 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2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